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법제처장 외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도 법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5.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의 법제정비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태료조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를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② (생략)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 -----.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 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 다)	<삭 제>
2. (생략)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 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 ⑦ (생략) <신 설>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의 법 제정비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 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

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
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 ⑪ (생략)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
제교육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
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6543